

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

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-332호 「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」에 의거하여,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업 내용

-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

2. 자금지원 개요

□ 지원 대상사업

○ ESCO 투자사업

-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(ESCO : Energy Service COmpany)*과 계약하여 에너지 절약형시설로 신·증설 및 개체하는 사업

*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 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,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

〈계약방식에 따른 ESCO사업 추진방법〉

-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: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사용자(고객)가 직접 조달(자체자금, 정책자금 등)하는 대신, ESCO는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효과를 보증하며 보증절감액을 미달할 경우 에너지사용자에게 차액보전 또는 초과성과 배분 등 보증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방식
-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: ESCO가 자금조달과 에너지절감량(액) 보증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며,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(액) 범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
- 성과확정계약 :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ESCO가 조달하고 예상절감량(액)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계약방식

○ 절약시설 설치사업

- (절약시설 설치사업) 자금지원지침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
- (생산시설 설치사업) 자금지원지침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
- (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) 자금지원지침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
- (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) 자금지원지침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을 개체 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

□ 지원 대상 설비(87개 설비)

-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

* 자금지원 대상설비 세부내역은 자금지원지침 [별표1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□ 사업별 용자지원 규모

세 부 사 업 명		예산 (백만원)	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이자율
1. ESCO 투자사업		95,000	300억원 이내	3년거치 7년 분할상환 (단열 개·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)	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」 에 따름
2. 절약시설 설치사업	절약시설 설치사업	176,510	300억원 이내	3년거치 5년 분할상환	
	생산시설 설치사업		50억원 이내		
	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		50억원 이내		
	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	5,000	50억원 이내		
합 계		276,510			

- ※ 위 표의 대출기간이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」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」의 규정에 따른다.
- ※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.
- ※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, 사용자 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※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.

□ 지원비율

-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% 이내로 함
- 단,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은 90% 이내로 함
- ESCO 투자사업 및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의 경우는 100% 이내로 함
-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은 최대 10%p 이내에서 지원비율 추가 상향
 - [별표 4]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·중견기업
 -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
 -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·중견기업

□ 지원범위

-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공사비, 설계·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, 시운전비 등에 한함. 다만, 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함

3. 이자율 및 대출 취급 금융기관

□ 이자율(분기별 변동금리)

-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함

□ 대출 취급 금융기관(은행)

- 한국산업은행·중소기업은행·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, 농협은행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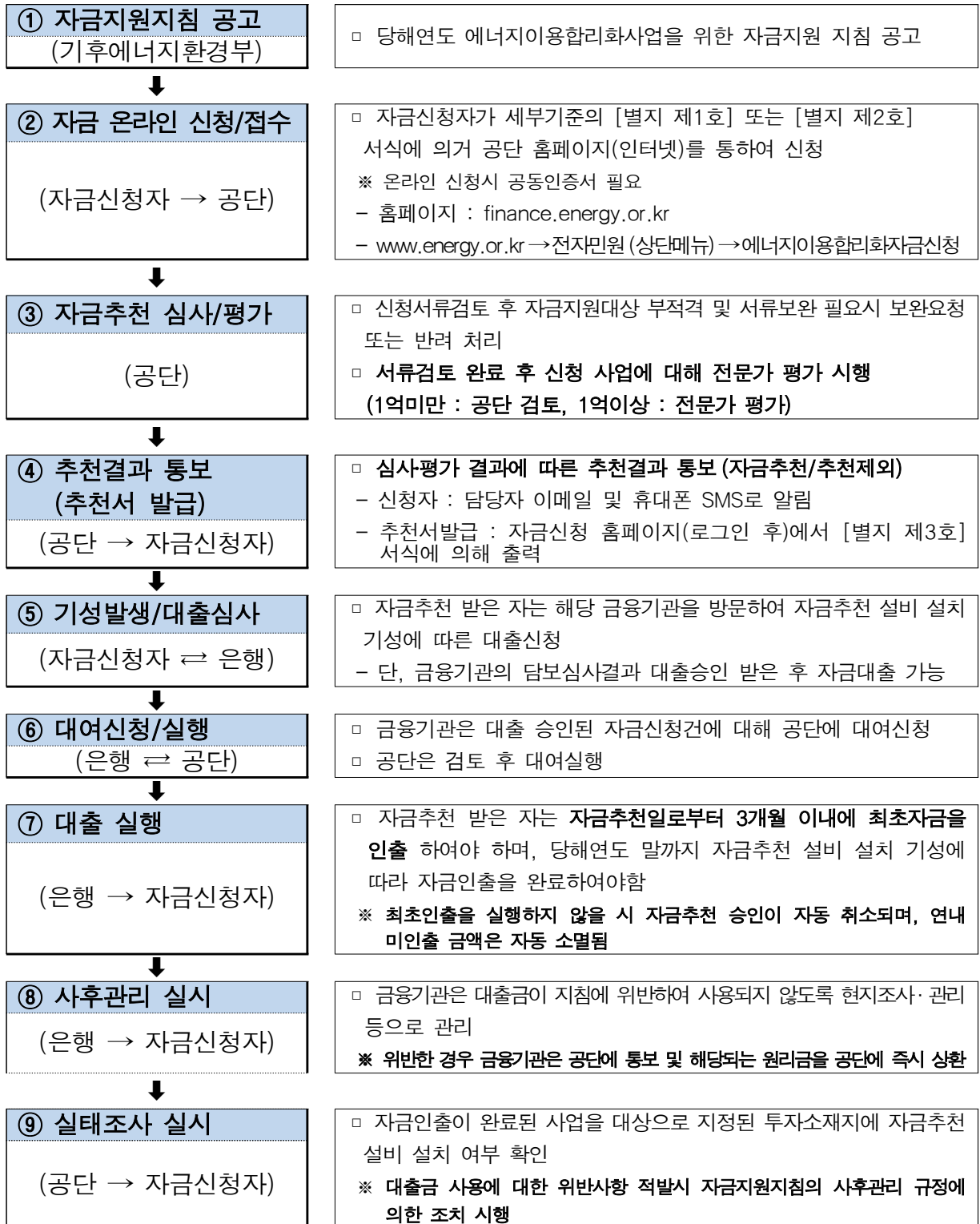
<대출 취급 금융기관 목록>

KDB산업은행(한국산업은행), IBK기업은행(중소기업은행)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M뱅크(구. 대구은행), BNK부산은행, BNK경남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산은캐피탈

※ 위 금융기관 중 자금신청업체(자)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(단, 단위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는 제외)

4. 자금지원 절차

□ 해당사업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(신용조사서류, 담보서류 등을 제출)하여 대출 진행



5. 자금추천 신청 방법 및 접수 일정

□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추천 신청

-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**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해**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(www.energy.or.kr) 메인화면 '전자민원'(상단 메뉴) 중 '기후변화대응 - 3.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신청' 선택,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

※ 또는, 인터넷 주소창에 finance.energy.or.kr 직접 입력 후 접속

- 자금심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(추천서 발급, 서류보완, 반려, 추천변경, 신청포기 등)은 온라인(신청자 로그인 후)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, 신청자 이메일을 통한 알림 발송 및 휴대폰 SMS 알림 서비스 제공

※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,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

□ 접수 일정

- 사업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온라인 접수

-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, 09시부터 18시까지(단, 사정에 따라 접수 기간 조정가능)

※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(토요일·공휴일 제외), 단 매월 10일이 공휴일 또는 기관 휴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접수

- 매월 추천신청 금액은 사업별 배정예산의 50% 범위에서 추천 신청을 마감할 수 있음

-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수시 접수 가능하고,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및 지침 제4조 제3항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액을 예산 대비 1/3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

6. 자금추천

□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,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금 추천할 수 있으며,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단 서류검토 후 예외로 함

- 1)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
- 2)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
- 3)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
- 4)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,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(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%이상인 경우에 한함)
- 5)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
- 6)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
- 7) 자금추천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
- 8)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

□ 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(전년도 4사분기 포함)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

-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음

7.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

- 공단으로부터 추천(또는 대출승인)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(또는 대출승인)받은 자금을 당해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,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음. 다만,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음
- 금융기관(또는 공단)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(설치장소, 시설의 사양 등)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통하여 확인하고,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함. 다만,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
 - 1)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. 다만,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(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)의 50%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
 - 2)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음
 - 3) 해당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 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추천금액 중 잔여 10%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.
 - 4)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

세금계산서,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같음하고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.

- 5)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기준으로 함. 다만,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,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

□ 사업수행보고서 제출

- 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최종자금 인출 전에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
-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(또는 용역)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8.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 취소

□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등

- 공단으로부터 추천(또는 대출승인)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

(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)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 (추천금액의 30% 이상)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

-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 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,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.
-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(또는 공단)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
- 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담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대출 부적격 판정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설비계약 전 해당 은행과 반드시 협의 후 신청해야 함
-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되며,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함

9. 사후관리

□ 금융기관 (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)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·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,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함 (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)

- 1)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
- 2)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

3) ESCO가 자금지원지침 제30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때

□ 대출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사항

- 향후 3년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
-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을 유용시부터 상환일까지 정부지정 연체이자(연리 13%)를 포함하여 징수

□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(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 보증 계약의 경우에는 ESCO)가 위반사항에 관련된 경우에 대한 벌칙 사항

- 자금지원지침 [별표2] 자금추천시설 설치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
10. 실태조사

□ 자금지원 완료사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등

-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 - 다만 민원·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 - 사업자(에너지사용자 포함)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, 자금추천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11. 유의사항

□ 자금의 성격

-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대출시에 담보가 필요한 자금 이므로,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
□ 최소 신청액은 2,000만원 이상

- 최소 신청액은 2,000만원 이상이며, 추천액은 100만원 단위로 함
- 다만, 소상공인은 최소 신청액을 적용받지 않고, ESCO투자사업의 단열 개·보수사업은 최소 1,000만원 이상

□ 해당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계속사업으로 변경신청

- 자금사용자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향후 자금추천 심사 보류 및 자금 회수 가능함
- 다만, 중요사항 변경시에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

* 계속사업 :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

□ 대상시설의 성능 및 범위

- 신청 대상 시설의 설치장소·설치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능 및 용량·설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하며,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공단이 시설의 성능을 보장 하지 않음
- 융자지원 대상설비는 자금지원지침 [별표1] `자금지원 세부내역'에

규정된 시설을 말하며, 원리나 구조가 자금지원 대상시설로서 적합하면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, 사업별 심사기준에 따라 자금 추천함

※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공단은 특정설비 또는 특정업체에 대한 인 증은 하지 않음

※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『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』 참조

□ 중소기업(개인사업자, 소상공인) 및 중견기업 확인

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법인신청자는 아래 양식의 확인서가 필요함
 -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)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(한국중견기업연합회)
 -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제출 필수
 - 다만,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, 공단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- ※ **중소기업** : 중소기업기본법(제2조)에 의해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(예) 주식회사,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, 개인사업자(사업주 본인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자), 영리특별법인, 중소기업협동조합, 의료기관(개인병원) 등
- ※ **소상공인** : 중소기업기본법(제2조)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
- ※ **중견기업**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으로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
- ※ 다만,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

□ 첨부서류 관련

- 계약서에 설치기기의 모델명 및 부가가치세(VAT) 포함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, 계약내역서 (견적서)는 상세히 기재해야 함
 - ※ '설치보조금'을 받는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, '고효율기기 장려금'을 받는 기기 등을 신청할 때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 액수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
-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그림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, PDF 파일만 제출 가능
- 설치장소(투자소재지)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서류
 - 설치장소인 건물 (토지)이 신청자 소유인 경우 : 설치장소 건물 (토지) 등기부등본 또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등 첨부
 - 설치장소인 건물 (토지)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: 부동산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첨부

□ 자금신청 반려 대상

- 자금지원 대상 자격이 부적격한 경우
 - 자금지원지침에 의한 자금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, 전년도 9월말까지 착수된 사업,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의 신청, 전년도 4분기에 자금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 추천을 포기한 사업 또는 당해 연도에 추천포기된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, 시공사가 신청자인 경우 등
- 자금추천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
 - 계약서, 계약내역서,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수서류 미첨부시

- 보완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(ESCO 투자사업의 경우 10일 이내)에 서류보완이 안 되거나 동일 사유의 보완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
- 자금추천 신청자가 추천심사 이전에 추천신청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
-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□ 심사·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여부 결정

- 자금추천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도입으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여부 결정
 - ※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자금지원 대상설비라고 하더라도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 - ※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『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』 참조

□ 타정책자금 수령 시 유의

- 정책융자금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, 융자금 등을 총사업비의 100%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금액은 신청 불가
 - ※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(13%)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함

12. 사업문의

□ 문의처

-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처

ESCO투자사업 관련 문의	추천심사 관련 문의	기타 제도 관련 문의
052-920-0493,5	052-920-0493~5	052-920-0484

- 붙임 1.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1부.
 2.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1부. 끝.